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국립학교설치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학교설치령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대학사무국장보임가능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종전 국립학교설치령입법예고(2022. 3. 31. ~ 5. 10.) 시 제출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3급 또는 4급·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나 3급 상당 또

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행정본부장은 3급 또는 4급·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②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소속 장관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3제1항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장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⑤ 총장이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의 평가 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며, 총장은 해당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⑥ 총장이 제5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의 범위에서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총장이 임기 중 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함께 면직된다. 다만,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⑨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제6조, 제7조의4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취업 지원 의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장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장은 각각의 대학의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 및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관 중 “비상기획,”을 “비상기획, 국립대학 운영혁신 지원 보좌 등”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 대학에 사무국·행정본부(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① ----- ----- ----- ----- ----- ----- 둔다. <후단 삭제>
<신 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나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로 대체할

<신 설>

②·③ (생략)

④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생실습과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관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둘 수 있고,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⑤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별표 8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수 있다.

③ 행정본부장은 3급 또는 4급·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한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3급 또는 4급·5급 일반직공무원-----

-----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⑦-----

----- 4급 또는 5급 일반직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입
 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공
 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
 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
 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
 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
 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신 설>

공무원-----

 ---. -----

 -----.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
 정」 제2조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정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다.

②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
 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
 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소
 속 장관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
 한다.

③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 제3조의3제1항 및 「고
 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
 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
 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
 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
 험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 협
 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장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⑤ 총장이 제4항에 따른 면접시
 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의 평가 방법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시험
 위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며, 총장은 해당 임용후
 보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
 정한다.

⑥ 총장이 제5항에 따라 임용후
 보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의 범위에서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총장이 임기 중 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함께 면직된다. 다만,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⑨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제6조,

제18조(복무의무) ①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도교육청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도교육청의 학생과 그 졸업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수업연한 기간동안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

제7조의4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취업 지원 의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장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장은 각각의 대학의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 및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6063